

위치정보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

2016. 11.11

서강대학교 이성엽 교수(법학박사)

I. 위치정보의 규제 현황

1. 서론

- 2005년 세계 최초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위치정보법) 제정

-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즉각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

- 위치정보는 긴급구조등의 공공목적에 필수적이고 산업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는 점

- 법 제정 당시 위치정보법은 피쳐폰에 의하여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차량, 물류 등을 관제하는 것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

- 현재는 스마트폰, 태블릿, 내비게이터 등의 단말기와 이동통신망, 무선인터넷(Wi-Fi), 블루투스(Bluetooth), 전자태그(RFID), GPS 등의 위치측위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음

1. 위치정보의 규제 현황

2.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

1) 주요 개념

- "위치정보"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.
- "개인위치정보"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(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"위치정보사업"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
- "위치기반서비스사업"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위치정보의 규제 현황



2) 위치정보사업등의 허가 등

-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,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
-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: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 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·이용 또는 제공 금지. 단, 긴급구조요청등의 경우는 제외
-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,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사항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

II. 위치정보규제의 문제점

1. 위치정보 개념의 문제

- 다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"이동성이 있는 물건"에 대해서도 규제.
 - 개인과의 연결성이 없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

2.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정보 개념의 상관성

- "개인위치정보"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(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"개인정보"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개인위치정보도 식별가능성이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
 - 이 경우 비식별화, 국외이전, 위탁등 위치정보법상 입법불비 조항은 정보통신망법등으로 해결

II. 위치정보규제의 문제점

3.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 진입규제의 문제

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득한 업체수는 2014년 12월 기준 794곳. 반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수는 2014년 12월 기준 137곳
-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상으로는 이동통신주파수, GPS등 기존 모바일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무선통신 외의 통신기술로 즉, 사물인터넷과 같이 블루투스, Lora(저전력광역통신망, lot용)와 같은 새로운 통신 기술을 사용할 시에도 모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득해야만 사업이 가능
- 예컨대, 병원에서 노인과 어린이들의 이탈방지와 길안내를 위해 비콘밴드를 도입했거나 호텔피트니스에서 고객의 운동량을 체크하기위해 웨어러블 비콘밴드를 착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병원이나 호텔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
- 소규모지역의 O2O 서비스를 위해 비콘센서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등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것은 스타트업벤처나 벤처기업에게는 큰 애로사항
 -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나 구비서류, 심사기간 등의 단축을 통한 부담경감 검토